

붙임

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

구 분	현행 (경계)	변경 (관심)	
① 방역조치 :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,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			
마스크	■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	▶ 권고 전환	
감염취약시설	■ 요양병원·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		
확진자 격리	■ 5일 권고 (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)	▶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(단, 중증환자,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)	
② 의료지원 :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·치료, 치료제·백신 지원은 유지			
진단검사비 (본인부담금)	유증상자		
	■ 먹는치료제 대상군	PCR 0원	▶ 1~3만원 대 (건보 지원 계속)
		RAT 6~9천원	
	■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■ 응급실 내원환자 ■ 중환자실 입원환자	RAT 6~9천원	▶ 종전과 동일 (건보 지원 계속)
	무증상자		
	■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·분만 환자 ■ 고위험 입원환자	PCR 0원	▶ 5~6만원 대 (지원 종료, 본인부담 100%)
		RAT 비급여	
	■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·입소자		
■ 보호자·간병인	PCR 0원	▶ 3~4만원 대 (지원 종료, 본인부담 100%)	
입원치료비	■ 건강보험 적용 외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		▶ 건보 지원 유지, 국비 지원은 종료* *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
치료제	■ 무상공급		▶ 1인 5만원* 정부 공급·지원체계 유지 *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
백신접종	■ 전 국민 무료접종		▶ 유지('23~'24절기까지)
③ 감시·대응 :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			
감시체계	■ 코로나19 양성자 감시		▶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
대응체계	■ 중수본(복지부) 및 방대본(질병청)		▶ 코로나19 대책반(질병청)